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강성호 연구위원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연금세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대와 달리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도 연금저축이 감소함. 이는 과세미달자 규모 증가, 낮은 세액공제율, 수수료 변화 외에 소득계층별 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특히, 본 분석은 중산층 이하 계층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득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가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중산층 이하 계층의 인지수준을 높여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연금세제 개편(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이후 중산층¹⁾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²⁾ 가입은 감소하고 그 이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³⁾ 중산층 이하 계층 또한 감소함.

- 2013~2014년 동안 연금저축 가입은 전체 기준 6.2%(15.2만 명) 감소한 반면,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기준 34.7%(3.3만 명), 5천만 원 이하 소득자 기준 14.2%(11.1만 명) 감소함.⁴⁾
 - 2014~2015년의 경우에도 연금저축 가입은 전체기준 1.4%(3.2만 명) 감소하였으나,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기준 54.1%(3.4만 명), 5천만 원 이하 소득자 기준 16.3%(11만 명) 감소
- 정원석·마지혜(2017)⁵⁾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과세미달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세액공제율은 높지 않아,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가입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보았음.

1) 2013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중산층 이하는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 5,500만 원(과세표준 약 4,500만 원)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2) 납부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적격 개인연금 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이 있음.
 3) 제도 설계상 근로자의 총급여(연간) 기준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연금저축 가입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방식의 한계세율(과세표준 기준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이하 15%) 적용보다 가처분소득이 높아져 연금저축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4) 본고의 소득기준은 근로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급여는 연간급여액(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함.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를 제외한 소득으로 소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득임.
 5) 정원석·마지혜(2017), 「연금저축의 감소 원인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12호, 보험연구원.

● 김세중·최원(2014)⁶⁾은 보험업권의 연금저축이 감소한 이유로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하⁷⁾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음.

■ 그러나 최근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부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과세미달자 규모 증가, 낮은 세액공제율, 수수료 인하 외에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⁸⁾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났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음.

● 연금세제 개편 전인 2013년의 소득증가율, 연금저축 증가율(2012년 대비)은 각각 2.9%, 2.3%로 소득과 연금저축 가입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함(〈표 1〉 참조).

〈표 1〉 연금세제 개편 전후의 소득 및 연금저축 변화율

(단위: %)

구분	2012년 대비 2013년		2013년 대비 2014년		2013년 대비 2015년	
	소득 증가율	연금저축 증가율	소득 증가율	연금저축 증가율	소득 증가율	연금저축 증가율
총급여	2.9	2.3	4.0	-2.2	6.6	-0.8
2천만 원 이하	0.9	20.4	3.2	-60.4	3.7	-75.2
2천만 원~5천만 원	0.0	1.8	-0.3	-12.4	-0.4	-14.4
5천만 원~1억 원	0.2	0.5	0.1	-0.3	1.0	-1.9
1억 원~10억 원	0.1	0.1	-0.1	0.2	0.1	-0.6
10억 원 초과	0.0	0.1	-2.8	-0.6	-5.5	-1.0
과세대상자	1.7	2.1	18.4	3.5	20.4	2.9
과세미달자	-1.3	17.6	66.3	-25.5	63.9	-35.5

주: 1) 1인 기준으로 환산함.

2) 과세대상자 + 과세미달자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

● 그러나 연금세제 개편 후인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4.0%) 불구하고 연금저축은 감소(-2.2%)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음영부분 참조).

- 특히, 2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동 기간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이 60.4%

6) 김세중·최원(2014),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KiRi 리포트』, 제311호, 보험연구원을 참조하였으며, 여기서 연금저축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분석함.

7) 생보사는 방카슈랑스채널의 수수료(예정신계약비)를 300% 내외에서 250% 내외로, 손보사는 대면채널과 방카슈랑스채널의 수수료(예정신계약비)를 각각 500% 내외에서 300% 내외, 300% 내외에서 250% 내외로 인하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1. 14),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8) 보험소비자조사(2016)에 의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5%)라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는 72.7%였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았음(저소득층의 90.6%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

나 크게 감소하였음.

- 이는 2천만 원 이하 계층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보장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정적 인식⁹⁾ 확산으로 연금저축 납부중지(혹은 해약)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됨.

● 한편, 세제개편 2년차인 2015년의 경우 소득증가에도 연금저축은 여전히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그 정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2014년의 상황보다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점을 볼 때 저소득층의 경우 제도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금저축에 의한 노후준비는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함.

■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아 오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로, 제도 변화가 없었던 대체가능한 금융상품은 가입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임.

● 한국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중산층 이하(5,500만 원¹⁰⁾ 이하) 근로자의 금융상품 가입 및 중단(혹은 해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에 비해 다른 금융상품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참조).

- 퇴직연금, 연금보험,¹¹⁾ 보장성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A)는 가입중단(4.2%)보다 새로 가입(4.4%)한 비율이 약 0.2%p 높았음.

- 퇴직연금,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B)는 가입중단(4.0%)보다 새로 가입(4.1%)한 비율이 약 0.1%p 높았음.

- 단일 상품으로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금보험의 경우는 가입중단(4.9%)보다 새로 가입(5.1%)한 비율이 약 0.2%p 높았음.

9) 보험소비자조사(2016) 결과를 통해 볼 때,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균소득이상자(예: 5,500만 원 이상)는 세제혜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평균소득 이하 자에도 그렇게 적용될 것이라고 인식된 것으로 보임.

10) 총급여 기준 (연간)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5%(그 이상은 12% 적용)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함.

11) 연금소득에 비과세되는 비적격 개인연금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만 취급하고 있음.

〈표 2〉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대체성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상태 변화(2013년 대비 2014년 변화)

(단위: %, 명)

구분	금융상품군(A)		금융상품군(B)		연금보험	
	변화 비율	변화 빈도	변화 비율	변화 빈도	변화 비율	변화 빈도
계속 가입	22.7	(3,684)	18.7	(2,434)	2.9	(93)
가입중단	4.2	(675)	4.0	(515)	4.9	(160)
새로 가입	4.4	(713)	4.1	(533)	5.1	(165)
계속 미가입	68.8	(11,163)	73.2	(9,506)	87.1	(2,829)
합계	100.0	(16,235)	100.0	(12,988)	100.0	(3,247)

주: 1) A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

2) B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

3) 계속 가입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가입, 가입중단은 2013년에 가입하고 2014년에 미가입, 새로 가입은 2013년에 미가입하고 2014년에 가입, 계속 미가입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미가입한 경우임.

자료: 한국재정패널조사 2013년 및 2014년 기준(7차, 8차 조사)으로 분석한 것임.

- 이는 2013년에서 2014년 동안 중산층 이하 계층에 유리하도록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변경이 추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에 비해 다른 금융상품이 상대적으로 선호된 것은 연금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오해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연금세제 및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연금세제 개편 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들 집단이 연금세제 개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무엇보다 연금저축이 재테크가 아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kiri**